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2019. 1. 29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1월 9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월 22일

-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육미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일부 용어·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에 포함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에 표기 (안 제1, 2조)
-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(안 제4조)
-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감사 실시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, 일부 용어,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」에 따라 목적 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어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, 안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“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”를 삭제하고,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김.
- 안 제4조에서는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음.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,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,
 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센터로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바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5년 의무 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.
 - 그러나,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목적, 조직형태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, 타 복지시설들과 달리 위탁기간을 꼭 3년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발견할 수 없고, 오히려 상위법령에 따른 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 및 수탁기관 양자에게 긍정적이며,
 -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위임사무로 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, 위탁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필요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안 제7조의2는,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업무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5조를 준용하여 센터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도지사의 지휘·감독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으며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며, 입법예고와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육미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월 9일
발 의 자 : 육미선, 박상돈, 박형용,
심기보, 이상욱, 최경천,
정상교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일부 용어·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에 포함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에 표기 (안 제1, 2조)
- 나.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(안 제4조)
- 다.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감사 실시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의2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-3호
- 라. 협 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- 마.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붙임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 도민”을 “충청북도민”으로, “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센터”를 “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센터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제2항 중 “13인”을 “13명”으로, “구성하며, 임기는 제4조 제2항”을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임기는 제4조제2항”으로 하며, “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자가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람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지사가 추천하는 5명 이내

제5조제3항제2호 중 “5인 이내의 자” 를 “5명 이내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

제5조제3항제4호 중 “1인 이내의 자” 를 “1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, “자중” 을 “사람 중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도의관련” 을 “충청북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2(지휘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기타수입금” 을 “그 밖의 수입금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(이하“센터“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위치) <u>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복대동)에 둔다.</u></p>	<p>제2조(위치) <u>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)--.</u></p>
<p>제4조(운영·관리의 위탁) ① <u>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운영·관리의 위탁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센터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운영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13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하며, 임기는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위원장은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<u>다음자가 된다.</u></p> <p>1. <u>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자</u></p> <p>2. 수탁자가 추천하는 <u>5인 이내의 자</u></p> <p>3. <u>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자</u></p> <p>4. 입주기관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<u>1인 이내의 자</u></p> <p>④ 위원은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중</u>에서 추천한다.</p> <p>1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<u>도의 관련 공무원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⑥·⑦ (생략)</p>	<p>제5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13명</u>----- <u>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임기는 제4조제2항----- 한다.</u></p> <p>③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람이 --.</u></p> <p>1. <u>도지사가 추천하는 5명 이내</u></p> <p>2. ----- <u>5명 이내</u></p> <p>3. <u>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</u></p> <p>4. ----- <u>1명</u></p> <p>④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<u>사람 중</u>-----.</p> <p>1. ----- -- <u>사람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충청북도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2(지휘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9조(운영비 보조)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, 수탁자부담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운영비 보조) ----- ----- 그 밖의 수입금----- -----.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위탁운영의 취소)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기타 도지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위탁운영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그 밖에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5조(지휘·감독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소·정지·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